

The Material, Structure, and System of Packaging Materials
Subject to Prohibition of Use

사용금지 대상 포장재의 재질 · 구조 및 제도

Writer

김성태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재질관리본부 재질관리팀장

Contents

- I. 사용금지 대상 및 예외 대상 포장재
- II. 포장재 재질 · 구조 개선 사전 준비
 - 1. 개선 가능 여부 및 재질대체 등 개선방법 검토
 - 2. 개선계획 수립
- III. 포장재 재질 · 구조 개선 명령 및 이행
- IV. 개선 명령 이행기간 연장 신청
- V. 개선대상 포장재 예외 인정 신청
- VI. 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

※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2020 포장재 자원순환 연차보고서' 를 바탕으로
작성했음을 알립니다.

I. 사용금지 대상 및 예외 대상 포장재

[표 1] 사용금지 대상 및 예외 대상 포장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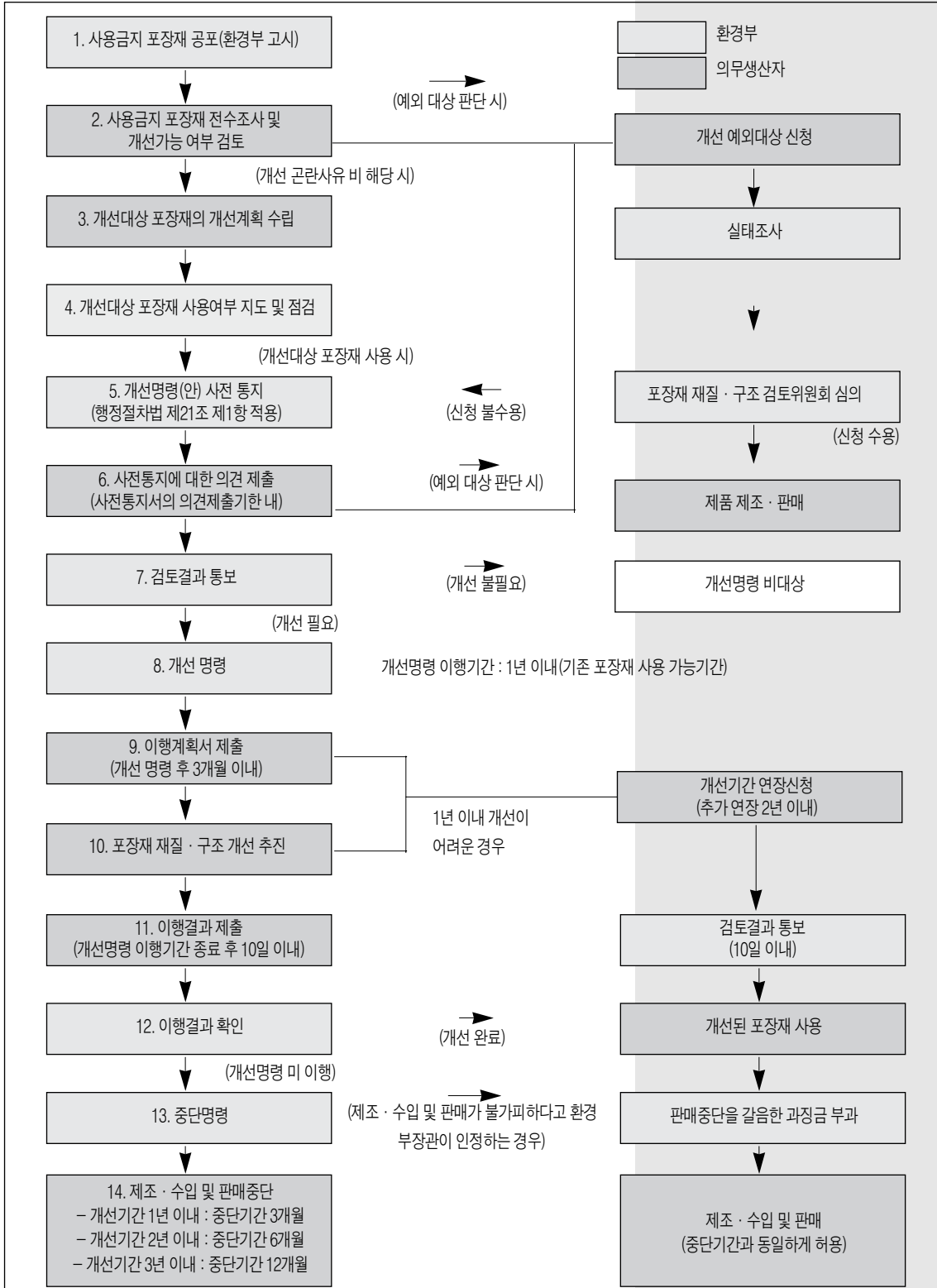
구분	사용금지 대상 제품 · 포장재 재질 · 구조 (「포장재의 재질 · 구조 기준」 제3조 제1항)	용금지 적용 예외(사용가능 제품 · 포장재) (「포장재의 재질 · 구조 기준」 제3조 제2항)
PVC 및 PVD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금지 적용 예외 포장재를 제외한 모든 포장재 - 폴리에틸렌 비닐 재질을 사용하여 칩합(래미네이션), 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를 포함 한다)를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체와 분리 가능한 마개에 도포 · 코팅 ● 수축포장 형태의 의약품,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 압박포장 형태의 의약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및 식용유지류 ● 고온기열 살균과정이 필요하고 상온에서 유통, 판매 가능한 햄류 · 소시지류(어육소시지 포함) ● 축 · 수산물의 포장에 사용되는 식품 포장용 랩 필름 ● 환경부장관이 사용금지 예외로 인정한 제품
먹는샘물 및 음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색 페트병 ● 열알칼리성 분리되지 않는 접(점)착제가 사용된 페트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색 페트병 ● 열알칼리성 분리 접착제 또는 접착제 미사용 ● 환경부장관이 사용금지 예외로 인정한 제품

① 시행일 : 2019년 12월 25일

② 개선 및 중단명령 대상

의무생산자가 사용금지 대상 포장재를 제조 · 수입하거나 이를 이용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이, 의무생산자가 개선기간 내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단명령이 내려진다. 다만 제조 · 수입 · 판매 중단명령을 해야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의 제조 · 수입 및 판매가 불가피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

[그림 1] 개선명령 및 제조·수입·판매 중단명령 절차



정하는 경우에는 중단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II.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사전 준비

1. 개선 가능 여부 및 재질 대체 등 개선방법 검토

사용금지대상 포장재에 대해 국내·외 사례조사, 전문가 검토, 포장재 대체 재질 테스트, 제조 공정 변경 등 소요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포장용기 및 부자재 공급업체 등과 사전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검토결과를 토대로 개선대상과 개선대상 포장재 예외 신청 대상으로 구분한다. 개선대상 포장재 예외 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포장재 재질·구조·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검토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자체 회수 체계를 갖춰 별도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제품(PVC 포장재 사용 제품), 두 번째, 포장재 재질·구조 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검토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개선대상 포장재의 예외로 인정한 제품(PVC 포장재 사용 제품, 먹는 샘물 및 음료), 세 번째, 제품의 기능 장애 발생 우려, 제조공정 변경 곤란, 대체 재질은 있으나 상용화가 어려운 경우 등이 해당된다.

2. 개선계획 수립

개선계획은 개선대상 포장재의 재질·구조, 제품명, 이행방법, 이행완료 예정일자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세부계획서에는 개선대상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량, 추진일정, 소요기간 및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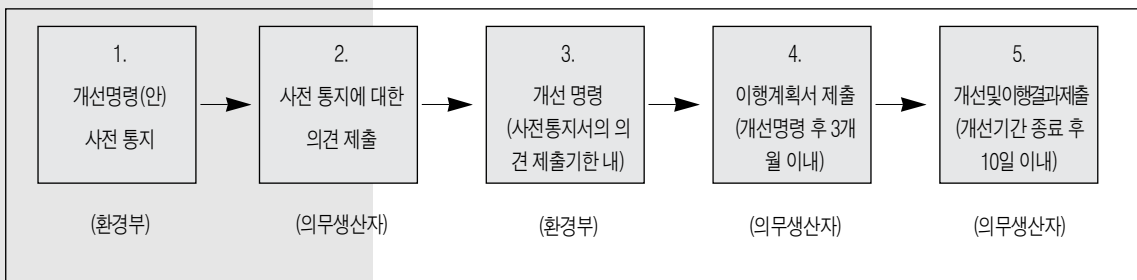
개선방법 및 개선 후 등급 등을 게재한다.

이 개선계획서는 환경부장관의 포장재의 재질·구조 개선 명령(안) 통지에 따른 이행계획서 제출 및 개선명령 이행기간 연장신청 여부 검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의 개선명령(안)에 대한 사전 통지서 접수 시에 개선명령(안)의 내용 및 개선명령 이행기간 적정성 검토, 제조공정 변경 또는 타 법에 의한 포장재의 안전성 테스트 등 필요 시 개선명령 이행기간 연장 타당성 검토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III.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명령 및 이행

환경부는 개선명령 내용, 개선기간 등이 포함된 개선명령안을 사전 통지하여 개선명령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은 후 개선명령서를 통지한다. 의무

[그림 2]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명령 및 이행 절차



생산자는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 제출하고, 개선기간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제출한다.

개선명령의 근거 법령은 자원재활용법 제3조의 5 제1항이며, 명령권자는 환경부장관, 양식은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5 서식에 따른다.

개선명령 이행계획서의 작성대상은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명령을 받은 제품의 포장재이며, 제출은 개선명령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 한다.

IV. 개선 명령 이행기간 연장 신청

제조공정 변경 필요 등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명령 이행기간(1년 이내) 내 개선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개선명령 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연장 신청 기간은 당초 개선명령 이행기간을 제외하고 2년 이내(당초 개선명령 이행기간까지 포함하여 최대 3년의 개선명령 이행기간 부여 가능)이며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 신청하면 된다.

V. 개선대상 포장재 예외 인정 신청

자체 회수 체계를 갖춰 별도 재활용이 가능한 PVC 재질 포장재 사용 제품(법적 근거: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환경부고시) 제3조 제2항 제1호 바목) 또는 포장재 재질·구조 변경 시 제품의 기능장애 발생, 제품의 제조 공정 변경에 어려움이 있거나 대체 재질의 상용화가 어려운 경우 등(법적 근거: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환경부고시) 제3조 제2항 제2호)은 개선대상 포장재 예외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유색 페트병을 무색 페트병으로 전환 시 제품의 변질 등 품질관리에 애로가 있는 음료 제품은 예외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의무생산자의 개선대상 제외 신청 → 접수(환경부) → 포장재 재질·구조 검토위원회 심의 → 환경부장관의 개선대상 예외 인정여부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별도로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문서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포장재 종류는 PVC와 페트병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제품명은 개선

대상 제품 중 예외 신청대상 제품을 기재한다. 신청대상 제품이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다. 신청사유는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 제3조 제2항 제1호 바목 또는 제3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되어 해당 포장재 사용이 불가피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이 또한 별지로 작성 가능하다. 첨부 서류는 신청 제품의 포장재 출고량 등 일반 현황 및 신청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

사용금지대상 포장재에 대한 검토 결과, 개선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개선명령안 미 통지 시에는 법 시행일 이후 의무생산자가 신청 시기를 판단하고, 개선명령안 통지 시에는 환경부장관의 개선명령안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VI. 중단명령을 같음한 과징금 부과


중단명령을 같음한 과징금 부과 대상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환경부장관의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조·수입·판매 중단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판매 중단 시 국민건강 등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 의무생산자가 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를 희망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다음으로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과징금 부과를 희망할 경우에는 과징금 산출을 위한 포장재 출고·수입량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한다. 부과금액은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 원, 10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과징금=제조·수입·판매 중단기간×1일당 과징금으로 계산한다. 이때 포장재·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가 중단되는 기간으로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에 따라 산정(최대 1년) 되며, 중단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 그리고 1일당 과징금=1일당 출고·수입량×재활용의무율×재활용단위비용이다. 이때 1일당 출고·수입량은 과징금 부과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전년도 1년간의 총출고·수입량을 360일로 나누어 환산한다.

다만 해당 연도 사업개시 또는 휴업 등에 따라 1년간의 총출고·수입량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출고·수입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 출고·수입량을

각각 90일 또는 30일로 나누어 1일당 출고·수입량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재활용의무율은 자원재활용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말하며, 재활용단위비용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별표 6에 의한 포장재별 재활용기준비용×재활용비용산정지수(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로 구한다.

부과이유 및 부과금액 등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환경부장관)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부과 대상자)해야만 한다. 



서적 안내

신·식품포장용 필름

「신·식품포장용 필름」-플렉시블 포장의 모든 것'은 플렉시블 포장 개략, 플라스틱의 성질, 필름제조법, 필름의 성질, 플렉시블 포장용 필름, 식품보존성, 플렉시블 포장용 각종 필름, 포장과 환경문제, 플렉시블 포장 등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KOREA PACKAGING ASSOCIATION INC.

(사)한국포장협회

· 가격 : 20,000원

· 구입 문의

TEL : (02)2026-8655

E-mail : kopac@chollian.net